

문화발전기금

2024년 '마카오 로케이션' 영상촬영 자금 지원 프로젝트

프로젝트 소개



타지 촬영 팀이 마카오를 배경으로 촬영하도록 장려하여 현지 영상제작기업에서 타지의 영상 작품 촬영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현지 업계 종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마카오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제 인지도를 향상시키며 문화 창작 및 관광 연동성을 촉진시킨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예산기금 사용 종료시, 신청 기간은 사전에 종료하게 된다.)

문화발전기금

2024년 '마카오 로케이션' 영상촬영 자금 지원 프로젝트

지원 범위

1



다음과 같은 영상 시간에 부합되는 영상작품을 **마카오에서 촬영 및 로케이션**하는 경우, 단 애니메이션 작품은 제외하며 또한 동일한 시즌에서 각회마다 한번만 신청 가능함:

	영상 시간	마카오 로케이션 출현 시간
 드라마(전체)	≥225분	≥10분
 영화/다큐멘터리	≥80분	≥2분
 예능 프로그램	≥30분	≥5분
 뮤직비디오(MV)	≥3분	≥1분
 광고 영상	≥30초	≥10초

2



타지 영상 프로젝트 즉, 타지 촬영팀이 주도하여 마카오 현지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프로젝트이다(타지 팀은 마카오에 오셔서 마카오에서의 로케이션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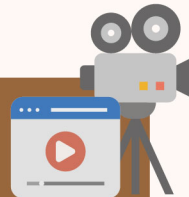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신청 규정 참조

문화발전기금

2024년 '마카오 로케이션' 영상촬영 자금 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영상 촬영 부분



- 신청 프로젝트는 신청 기간의 시작(2024년 2월 6일) 전에 마카오에서 그 어떠한 로케이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 신청 프로젝트는 마카오에서 촬영하는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한다.
- 자금 조달 기간 동안 공개 방송이 완료되어야 하며, 공개 버전의 영상 시간과 마카오 촬영지의 출현시간은 규정된 시간 제한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개 방송

 <p>영화,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장선 배급/개봉• TV 방송• 영화 및 TV 영상 사이트 배급/개봉• 영상 축전 상영 <p>*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재생하는 프로젝트 제외</p>	
 <p>뮤직비디오(MV), 광고 영상</p>	<p>온라인 재생 미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사이트• TV	<p>오프라인 재생 미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핑몰/야외 TV• 대중교통 TV
<p>*방송 기간은 연속 5일 이상이어야 한다.</p>		

문화발전기금

2024년 '마카오 로케이션' 영상촬영 자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신청자는 '타지 촬영 프로젝트'의 **마카오 제작사**(마카오에서 촬영하는 작업 배치 및 예산 집행의 총괄 담당)여야 하며, 다음 조건에 충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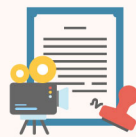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
자연인 상업기업주

或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 상업기업주



사업 내용은 영상 제작과
관련있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정보 또는 영입세 신고서 기준)

지원 유형



지원금

- 승인 지원금의 상한선은 신청 프로젝트가 **마카오에서 촬영 및 로케이션 예산 지출의 40%**이며, 상한선은 **200만 마카오 달러**이다.
- 허가 급부 지원금은 프로젝트가 마카오에서 촬영 및 로케이션하는 경우, 실제 지출에 따라 조정된다.

지원 기간



36개월

지급 대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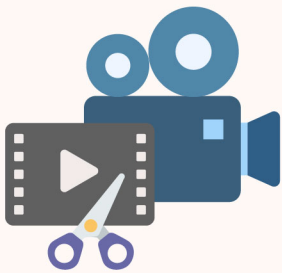


제한을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문화발전기금

2024년 '마카오 로케이션' 영상촬영 자금 지원 프로젝트

자금지원 지출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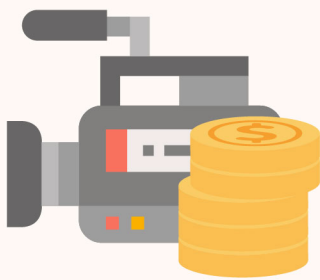
제작비
(마카오특별행정구 민간
기업/마카오 주민 공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며마카오에서 촬영, 공연 및
포스트 프로덕션을 위한 서비스 또는
제품에서 파생 된 비용을 포함한다)



**교통,
출장 및 운송 비용**
(이코노미석)



**장소, 사무실 및 기타
부동산 임대 비용**
(마카오 현지 촬영 장소
임대료에 한정)



**설비 및 기타 동산
임대 비용**



숙박비용
(일반/스탠다드룸)

*기타 지출 및 신청인이 제공한 서비스나 제품 관련 비용은 예산 지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문화발전기금

2024년 '마카오 로케이션' 영상촬영 자금 지원 프로젝트

심사 기준



마카오 도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 역할



영상물 제작 규모 및 방송
채널의 수용성



마카오 영상 업계의 참여도



신청자의 관리 수준, 실행 능력,
전문성 및 기술 능력, 경험

*타지 촬영팀이 외국인이 법에 따라 설립한 주체인 경우, 신청 프로젝트는 추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10점이다.

*신청자의 과거 실행 및 상환 기록을 감안해야 한다.

조회 방식



☎ 2850 1000
✉ dgaf@fdc.gov.mo
🌐 www.fdc.gov.mo

2024년 '마카오 로케이션' 영상촬영 자금 지원 프로젝트

1. 자금 지원 목적

문화발전기금은 '문화발전기금 자금 조달 및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마카오에서의 타지 촬영팀을 격려하거나 유치하여 현지 영상기업이 타지 영상작품 촬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 종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향상시키고 현지인을 위한 더 많은 직업 기회를 창출하여 마카오 이미지를 강화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며 문화 창작 및 관광의 연동성을 촉진시킨다.

2. 신청 기간

2.1 **신청 기간** : 2024년 2월 6일 오전 9시부터 2024년 11월 29일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본 지원 계획 사용이 완료되면 신청서는 조기에 마감되어 기금 사이트에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3. 지원 범위

3.1 다음과 같은 영상 시간에 부합되는 영상작품을 마카오에서 촬영 및 로케이션하는 경우, 단 애니메이션 작품은 제외하며 또한 동일한 시즌에서 각회마다 한번만 신청 가능하다:

3.1.1 시간이 225분 이상인 드라마(전체), 마카오 로케이션 출현 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3.1.2 시간이 80분 이상인 영화, 다큐멘터리, 마카오 로케이션 출현 시간은 2분 이상이어야 한다.

3.1.3 시간이 30분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마카오 로케이션 출현 시간은 5분 이상이어야 한다.

3.1.4 시간이 3분 이상인 뮤직비디오(MV), 마카오 로케이션 출현 시간은 1분 이상이어야 한다.

3.1.5 시간이 30초 이상인 광고 영상, 마카오 로케이션 출현 시간은 10초 이상 이어야 한다.

3.2 **타지 영상 프로젝트**는 즉, 타지 촬영팀이 주도하여 마카오 현지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프로젝트이다(타지 팀은 마카오에 오셔서 마카오에서의 로케이션 업무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4. 지원 요구 사항

4.1 영상 촬영 부분:

- 4.1.1 신청 프로젝트는 신청 기간의 시작(2024년 2월 6일) 전에 마카오에서 그 어떠한 로케이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 4.1.2 신청 프로젝트는 마카오에서 촬영하는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한다.
- 4.1.3 자금 조달 기간 동안 공개 방송이 완료되어야 하며, 공개 버전의 영상 시간과 마카오 촬영지의 출현시간은 제 3.1 항의 규정 기한 이상이어야 한다.
 - 4.1.3.1 영화,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인 경우, 공개 상영이란 공개 방영이며, 즉 극장선 배급/상영, 텔레비전 방송, 영상 비디오 웹사이트 배급/상영, 영상 축전 상영이며,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재생 프로젝트는 제외이다.
 - 4.1.3.2 뮤직비디오(MV), 광고 영상의 경우, 공개 방송이란 인터넷 사이트 방송, TV 방송, 쇼핑몰, 야외 TV, 대중교통 TV 등 오프라인 재생 미디어이며, 방송 기간은 연속 5일 이상이어야 한다.

5.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5.1 신청인은 '타지 촬영 프로젝트'의 마카오 제작사(마카오에서 촬영하는 작업 배치 및 예산 집행의 총괄 담당)여야 하며, 다음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 5.1.1 자연인 상업 기업주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이어야 하며, 그 기업은 세무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5.1.2 법인 상업 기업주인 경우,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그 기업은 세무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5.1.3 경영하는 사업은 영상물 제작과 관련있어야

한다(제12.1.2항 사업자등록정보 또는 제12.1.3항 영업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함).

6. 지원 유형

6.1 지원금.

7. 본 재정 지원 계획의 총 예산 금액, 지원 대상수 및 금액 상한선

7.1 본 재정 지원 계획의 총 예산 금액: 2,400만 마카오 달러.

7.2 지원 대상수 : 제한을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단, 재정 지원을 허가 받은 신청 프로젝트의 최종 수량은 상기 제시한 본 재정 지원 계획의 총 예산 금액에 한정된다.

7.3 지원금: 승인 지원금의 상한선은 신청 프로젝트가 마카오에서 촬영 및 로케이션 예산 지출(즉, 제8.1항 및 제8.2항 합계)의 40%이며, 상한선은 200만 마카오 달러이다.

7.4 허가 급부 지원금은 프로젝트가 마카오에서 촬영 및 로케이션 하는 경우 실제 지출에 따라 조정된다(자세한 내용은 제9항 지원금 조정 참조).

8. 지원가능 및 지원 불가 관련 지출 범위

8.1 지원 가능하고 예산 지출에 포함되는 지출은 재정지원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8.1.1 제작비(마카오특별행정구 사적 실체/마카오 주민 공급업체):마카오 특별행정구 사적 실체/마카오 주민이 제공하는 영상제작(마카오에서 촬영, 공연 및 포스트 프로덕션)의 서비스 또는 제품에서 파생된 비용에 한정되며 제작 감독, 연출팀, 제작팀, 배우팀, 촬영팀, 조명팀, 미술 및 의상팀,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링팀, 녹음팀 등 기타 인원 비용, 소품설치, 의상 등 기타 물자 비용, 사후 제작 비용(음향 효과, 편집, 조색, CG 특수 효과, 백 뮤직)을 포함한다;

8.1.2 교통, 출장 및 운송비용(이코노미석): 촬영팀 구성원의 마카오 왕래 이코노미석(출발지 또는 도착지는 마카오여야 함) 및 마카오 현지 교통비, 기자재 운송비용에 한정된다;

- 8.1.3 **장소, 사무실 및 기타 부동산 임대 비용:** 마카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촬영으로 인해 파생된 **마카오 현지 촬영 장소 임대료에 한정된다.**
- 8.1.4 **설비 및 기타 동산 임대 비용:** 프로젝트로 인해 마카오에서 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파생된 기재 설비 임대(촬영기자재, 조명기자재, 녹음기자재, 발전차/기계, 궤도) 비용에 한정된다.
- 8.1.5 **숙박비용(일반/스탠다드 객실):** 직접 촬영, 공연 및 포스트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인원이 **마카오 현지 호텔에** 투숙하는 숙박비용(일반/스탠다드 객실)에 한정된다.
- 8.2 **재정지원 불가지만 예산 지출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음:**
 - 8.2.1 **제작 비용(마카오특별행정구 사적 실체/마카오 주민 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 사적 실체가 아니거나/마카오 주민이 아닌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영상제작(마카오에서 촬영, 공연 및 포스트 프로덕션)의 서비스 또는 제품에서 파생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8.2.2 **교통, 출장 및 운송비용(이코노미석이 아닐 경우):** 촬영팀 구성원이 마카오를 왕래하는 이코노미석(출발지 또는 도착지는 마카오여야 함)이 아닐경우;
 - 8.2.3 **숙박비(일반/스탠다드룸이 아닐 경우):** 직접 촬영, 공연 및 포스트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인원이 **마카오 현지 호텔에** 투숙하는 숙박비용(일반/스탠다드룸이 아닐 경우).
 - 8.2.4 **보험지출:** 마카오에서의 촬영으로 파생된 보험비용을 포함한다.
 - 8.2.5 **기타 지출:** 마카오에서 촬영을 진행하여 파생된 식사비, 마카오에서 촬영을 진행하여 파생된 기자재 구입 또는 유지보수 비용, 마카오에서 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파생된 **협상절차 집행 비용**에 제한 한다.
- 8.3 **제8.1항 및 제8.2항에서 언급한 지출은 마카오에서 진행하는 촬영 로케이션작업의 예산지출범위 내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기타 지출 및 신청인이 제공한 서비스 또는 제품 비용은 예산지출범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9. 지원 조정

- 9.1 총결산 시 마카오에서 진행하는 **촬영 로케이션 프로젝트의 실제 지출이 신청표의 예산 지출보다 낮을 경우, 비율** ([예산 지출-실제 지출)/예산 지출]에 따라 조달 금액은 **하향 조정된다.**

10. 지원 기간

- 10.1 지원기간은 **36개월**로,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신청 제출을 확인한 다음 날부터 계산되거나, 늦어도 합의서 체결 후 익월 처음 날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작일자는 기금 및 지원대상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 10.2 지원금 대상자가 자금지원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는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면 기금 관리위원회는 자금 지원 기간을 1회이상 연장할 수 있지만 누적 연장 기간은 기존 자금 지원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11. 보증

- 11.1 신청인이 법인 상업주일 경우, **그 주요 주주는 신청인이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경우** (지원승인이 취소되고, 프로젝트 실제 지출이 예산 지출보다 적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11.2 지원금 대상자와 보증인은 프로젝트에 대한 **어음과 책임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12. 신청

- 12.1 신청인은 마카오 공공서비스 원계정(이하 원계정)의 주체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문화발전기금의 인터넷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파일을 업로드해야 한다:**
- 12.1.1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류;
 - 12.1.2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 12.1.3 영업세 신고서(M/1 도표) 영인본 또는 재정국에서 발행한 영업 개시 성명서;
 - 12.1.4 재정국에서 발급하였으며 신청인이 결산해야 할 세금, 세액 및 기타 항목으로 인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의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12.1.5 신청인의 최근 영업세 징세 증명서-M/8 도표;

12.1.6 사회보장기금에 납입한 증명서류. 납입의무가 없는 경우는 성명서를 제공하여 성명해야 한다;

12.1.7 기업 최근 2년간의 손익계산서;

12.1.8 영상물 콘텐츠 소개, 즉 영상물 내용 소개;

12.1.9 신청인과 타지 촬영팀이 체결한 협의서 또는 타지 촬영팀의 위임증명서류 (협의서 또는 위임증명서는 신청인이 마카오에서 촬영시, 업무 배치와 예산 집행을 총괄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2.1.10 신청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서(촬영장소 및 장면, 시간, 영상 방영채널, 신청인의 책임 업무 명세를 포함한 마카오의 촬영계획을 서술해야 함);

12.1.11 신청 프로젝트의 재무 예산(기금 요구 양식에 따라 작성);

12.1.12 신청인 및 타지 촬영팀의 영상 제작 경험, 즉 제작에 참여했던 영상 작품 기록, 방영 및 배급 성과, 팀 소개, 수상 등이 포함된다;

12.1.13 기타 신청에 도움이 되는 서류, 예를 들어 협력동의서, 예산 지출 견적서 등 이다.

12.2 신청인은 반드시 자료를 작성하고, 업로드한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업로드할 수 없어 현장에서 제출해야 하며 실물 자료를 반드시 미리 작성해야 하며, **일단 인터넷에서 신청을 제출 및 확인 후, 프로젝트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12.3 신청인은 신청일자 마감 전(2024년 11월 29일 오후 5:30)에 직접 기금기관을 방문하여 **12.2** 항의 현장에서 제출한 실물자료를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기금기관에서는 기한이 지난후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신청 서류 및 자료는 현장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12.4 신청서 작성 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12.5 신청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주의사항:

12.5.1 신청인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12.1.2항에 언급된 사업자등록증, 제12.1.4항에 언급된 채무 불이행증명서를

- 기금에서 조회함에 있어 협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12.5.2 기금에서는 신청인에게 서류 원본, 설명, 신청서류에 필수 불가결한 기타 서류,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2.5.3 신청인은 작성자료 및 업로드한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기금에서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대한 변경을 수락하지 않는다.
- 12.5.4 신청인은 허위 진술,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획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5.5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기금에 통지해야 하며, 신청은 즉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12.5.6 기금에서는 본 계획과 관련하여 접수한 모든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예비 분석

- 13.1 기금에서는 신청서류에 대한 **초보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신청인의 자격, 신청항목이 제 12 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자금 지원신청이 지원비준 요건(즉, 제 3 항의 지원 범위, 제 4 항의 지원 요구 및 제 5 항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 13.2 신청서가 위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금은 신청인에게 **5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다만 제 12.1.1 항부터 제 12.1.7 항까지 언급된 서류에 제한 한다.**
- 13.3 만약 자금지원 신청이 자금지원 비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충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충 제출한 서류가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 13.4 초보적인 분석을 거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은 관련 신청을 기각하고, 평가심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 13.4.1 신청 프로젝트가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3.4.2 신청 프로젝트가 제3항에 규정된 재정지원의 범위에

- 속하지 않는 경우;
- 13.4.3 신청 프로젝트가 제4항에 규정된 재정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3.4.4 신청인이 제5항에 규정된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3.4.5 신청서류가 제12항에 규정된 신청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3.4.6 신청인이 기금 기타 지원대상 프로젝트에서 연체미상환/미반환/미반환금 관련 항목이 있는 상태인 경우;
- 13.4.7 신청인이 기금 지원 거부 목록에 있는 경우;
- 13.4.8 신청 프로젝트는 마카오 기타 공공 부문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공시한 자금지원 계획 범위에 속하는 경우;
- 13.4.9 신청인이 동일한 프로젝트를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13.4.10 신청 프로젝트 영상물이 7월 8일 법률 제10/78/M호 법률(해당 지역에서 포르노 영상 또는 음란물의 판매, 진열 및 전시에 관한 조치) 규정에 속하는 포르노 영상물 또는 타지에서 포르노 카테고리 판정된 영상물일 경우;
- 13.4.11 신청 프로젝트의 내용이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질서 또는 풍습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3.5 신청을 기각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금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행사 및 항목 평가심사위원회에 보내 평가심사를 진행한다.

14. 심사

- 14.1 행사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관리위원회 주석이 심의해야 할 항목의 특성에 근거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7 명의 영상계, 학술계, 상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임명한다.
- 14.2 행사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는 최소한 과반수의 회원이 출석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및 회의 중요사항을 기록한다.
- 14.3 신청인의 대표는 반드시 심사회회에 출석하여 신청 프로젝트의

내용을 소개하고 심사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미 제출한 서류에 따라 서면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4.4 행사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는 아래의 평가심사기준에 따라 평점을 한다.

14.4.1 마카오 도시 이미지에 대한 프로젝트의 홍보 역할(25%);

14.4.2 영상물 제작규모 및 방송채널의 수용성(25%);

14.4.3 마카오 영상업계의 참여도(25%);

14.4.4 신청인의 관리수준, 실행능력 및 주요팀의 전문성 및 기술력, 과거 관련 경험(25%)

14.5 타지 촬영팀이 외국인이 법에 따라 설립한 주체인 경우, 신청 프로젝트는 추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10 점**이다.

14.6 심사점수가 60 점 이상이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14.7 다음 의견 및 기록을 충분히 고려하여 허가 주체가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14.7.1 행사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의견;

14.7.2 신청인이 지원금 행사 및 프로젝트 허가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수행 및 상환 기록.

14.8 지원금 허가 금액은 신청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 및 취득한 평가 점수와 관련된다.

14.9 예산의 한계로 인해, 허가 주체는 신청하는 행사/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15. 협의서

15.1 기금기관과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자금 조달 승인 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15.2 **협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결과:** 만약 지원금 대상자가 기금기관에서 지정한 일자, 시간 및 장소에서 협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준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불가항력 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지원금 대상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원인은 제외한다.**

16. 프로젝트 내용 관련 변경

- 16.1 촬영기법, 시나리오 내용('스토리 요강' 변경 제외), 주요 구성원이 아닌 등 창작에 대한 결정에 관련 변경이 있으나 프로젝트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보고서를 제출할 때 설명해야 한다.
- 16.2 프로젝트 내용의 변경이 아래 언급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금에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6.2.1 마카오 촬영 장소 및 장면 50% 이상 변경;
 - 16.2.2 공개 방송 채널 변경;
 - 16.2.3 자금 조달 대상자의 주주, 프로젝트 팀의 주요 구성원 변경;
 - 16.2.4 기타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변경과 관련된 내용.
- 16.3 기금은 **프로젝트 영화 장르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다.

17. 제출 진행 보고서, 총결 보고서 및 실행 협의 절차 보고서

- 17.1 지원금 대상자는 협의서 체결 익일로 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금으로 인해 프로젝트관련 초빙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 사무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17.2 지원금 대상자는 자금조달 기간 내에 지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의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
 - 17.2.1 지원금 대상자는 **매12개월에 한번씩 익월 말일까지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7.2.2 지원금 대상자는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90일 이내 '협의절차 이행보고서'**(지원금 대상자가 초빙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 사무소에서 자금조달 대상 프로젝트의 수입지출 및 재무상황에 대해 협의 절차를 수행한 후 작성, 지원금 대상자는 관련 비용을 자체 부담)를 제출해야 한다.

17.2.2.1 지원금 금액이 **100만 마카오 달러 또는 이상인** 프로젝트: 지원금 대상자는 공공자산감독관리국(DSGAP)의 “**지원금 대상 행사 또는 프로젝트 최종 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방식으로 작성 요구에 따라 최종 보고서 및 협상절차 집행 보고서를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한다.

17.2.2.2 지원금 금액이 **100만 마카오 달러 미만인** 프로젝트: 지원금 대상자는 작성 요구에 따라 **기금에** 최종 보고서 및 협상절차 집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7.3 제 17.1 항에 언급된 업무 약정서 및 제 17.2.2 항에 언급된 협의절차 이행보고서의 양식은 공공자산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제 001/GPSAP/AF/2023 호 ‘자금지원 행사 또는 프로젝트 검사 지침’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7.4 **보고서에 첨부된 증빙서류:** 지원금 대상자는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 및 총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프로젝트 집행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카오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제작진의 전체 명단; - 촬영기간 중 작업사진(작업사진은 6 장 이상, 사진의 소속기간 및 촬영장소 표시); - 공개 방영 정보 및 마케팅 경로 관련 증명서(온라인 판매 플랫폼 스크린샷 또는 영상 및 동영상 사이트의 배급/방영 채널 스크린 샷 포함); - 상영 효과 증명서(흥행 데이터 증명서 포함; 영상 및 동영상 사이트 방영/인터넷 사이트 재생 방식을 채택할 경우, 클릭 트래픽 등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매스컴 보도.

17.5 **보고서 제출 연기 신청:** 불가항력 또는 기타 지원금 대상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 17.2 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대상자는 관련 사실이

- 발생한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기금에 통지해야 한다.
- 17.6 위에서 언급한 상황의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사유가 해소된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다음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7.7 자금 관리 위원회는 이유 설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 17.2 항에서 언급한 기간을 한 번 연장을 허락하지만 기간은 **90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17.8 기금이 서류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 대상자는 기금이 지정한 기간 내에 보충 설명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제출된 문서로 처리된다.

18. 지출 확인

- 18.1 **지출 확인의 목적 및 의무:** 자금 조달 대상자가 자금 조달 행사 및 프로젝트에 실제로 행한 지출이 본 정관에서 정한 자금 조달 가능 지출에 속함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출은 반드시 기금 확인을 거쳐야 한다.**
- 18.2 **확인방식:** 지원금 대상자의 **합의절차 이행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실비지급**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금 대상자는 제 21.1.9 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필요할 경우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18.3 **문서에 대한 요구사항:**
- 18.3.1 **지출의 대상은 회사 또는 기관:** 회사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송장 또는 영수증과 같은 관련 지출 증빙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명칭 또는 성명,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 개설 일자, 증빙 번호, 금액 및 판매자의 연락 자료, 예를 들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거나 지원금 대상자가 위에서 언급한 관련 회사 또는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명기해야 한다. 임대 재산과 관련된 경우 위의 정보 외에도 송장 또는 영수증에 부동산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18.3.2 **지출의 대상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관련 지출 증빙서류, 예를 들어 자연인이 발행한 영수증(판매자와 구매자의

명칭 또는 성명,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 개설일자, 증빙번호, 금액 및 판매자의 연락 자료, 예를 들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거나 지원금 대상자가 상기 연락처 정보를 명기해야 한다), 직업세 M/7 양식 증빙(고객 및 발송자 명칭 또는 성명, 서비스 명칭, 발송자의 세금 번호, 개설일자, 증빙번호, 직업세 정관 별표에 기재된 업무 및 금액이 기재되어야 함)이다

18.3.3 증빙서류에 대한 기타 규정:

18.3.3.1 증빙의 지출금액이 할인과 관련된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을 명기해야 한다;

18.3.3.2 마카오 달러가 아닌 거래와 관련된 경우, 수금자는 관련된 통화의 명칭과 환율을 명시해야 한다;

18.3.3.3 증빙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지원금 대상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석해야 하며, 지원금 대상자가 서명인이 되어 관련 서류에 서명 및 서명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18.3.3.4 만약 증빙서류상의 자료를 수정해야 할 경우,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에 날인해야 한다;

18.3.3.5 거래가 제 19 항에서 언급된 관련 거래 상황과 관련될 경우, 지원금 대상자는 서류에 이를 기재하고 관련 거래측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9. 관련거래

19.1 신청인이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로 부터 서비스 또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류에 거래대상의 명칭, 신청인과의 관계 및 거래의 예상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19.1.1 신청인(자연인 사업주)은 공급업자의 주주이며, 공급업자 행정기관의 구성원이다.

19.1.2 신청인(자연인 사업주)의 배우자/부모/자녀는 공급업자,

공급업자의 주주, 공급업자의 행정기관의 구성원이다.

19.1.3 신청인(법인 상업 기업주)의 주주,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및 상기 양자의 배우자/부모/자녀는 공급업자, 공급업자의 주주, 공급업자의 행정관리기관 구성원이다.

19.1.4 신청인(법인 상업 기업주)은 공급업자의 주주이다.

19.2 위 항에서 언급된 관련 거래에 대하여 기금의 지원금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공급업체가 신청인에게 합계 총 10 만 마카오 달러 또는 이상의 용역 또는 상품을 제공한 경우, 신청인은 최종 보고서에 신고하고 거래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19.3 위 항의 신고가 필요한 사항 및 기금의 지원금으로 제 19.1 항의 공급업체에 대한 지출 지급에 대해 지원금 대상자는 프로젝트 진행보고서 및 총결보고서에 최소한 2 개 이상의 비관련자 공급업체(즉, 제 19.1 항에서 언급된 공급업체에 속하지 않음)에 가격 조회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사전 제공해야 하며 기금은 **최저가격의 견적**을 지출 확인의 상한선으로 하며, 관련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출은 기금이 지원한 금액으로 지불할 수 없다.

20. 지원금 지급 방식

20.1 금액은 아래 표의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초기 지불	최종 지불 (총결산보고서 수용 후)
지원금 한도 지급 비율	80%	20%

21. 지원 대상자의 의무

21.1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1.1.1 사실대로 자료를 제공하고 성명한다;

21.1.2 재정지원금을 결정되고 지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21.1.3 재정지원을 받는 행사 또는 프로젝트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한다;

21.1.4 제17항에 언급된 보고서를 제시간에 제출한다;

- 21.1.5 관련 수입, 지출 및 재정 상태의 검사를 포함한 기금의 운용 보조자금에 대한 감사를 접수하고 협조한다;
- 21.1.6 자체적으로 관련 부처(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타지 포함)에 신청하여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반 비준서 및 허가 서류를 신청하여 취득한다;
- 21.1.7 제23.3.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한다;
- 21.1.8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한다;
- 21.1.9 지원대상 행사/프로젝트의 최초 수입과 지출 증빙을 최소 5년간 완전하게 보관한다;
- 21.1.10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관리해야 하며 지원금 대상자는 프로젝트 수입 및 자체 자금을 전용계좌에 예치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전용계좌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1.1.11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에서의 감사, 교육 또는 홍보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에서 텍스트, 촬영, 사진 및 기타 형식의 기록에 대한 기금의 권리 보유에 동의한다;
- 21.1.12 영상 작품 및 프로젝트 관련 모든 홍보행사, 보도자료 및 홍보물에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문화발전기금 지원’ 또는 ‘지원기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문화발전기금’이 표시되어야 한다;
- 21.1.13 협약서에 서명한 후, 신청 프로젝트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성과는 시정홍보 및 보급을 위해 기금 웹사이트 및 대외 공개 문서에 게시된다;
- 21.1.14 신청된 프로젝트의 내용 및 프로젝트 수행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증하고, 프로젝트 결과 및 프로젝트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조치방법, 취득한 정보 등 관련 적법성을 보장한다;
- 21.1.15 기금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한다;
- 21.1.16 기금 및 공공자산감독관리국의 감사를 위한 지침을 준수한다;

21.1.17 행정법규 제18/2022호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공재정지원제도’, 사회문화사 국장이 회시하여 승인한 제5/2023호 ‘문화발전기금 지원비준 규정’을 준수하며, 기타 적용되는 법률과 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21.2 기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내용은 마카오 기타 공공부문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경할 수 없다.

22. 실행을 종료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행사 및 프로젝트

22.1 자금조달 기간 동안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금은 지원금 대상자의 집행행사 및 프로젝트의 종료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22.1.1 불가항력 또는 지원금 대상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원 기간 내에 행사/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2.1.2 지원금 대상자가 지원받은 전부 지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경우.

22.2 제 22.1 항에서 언급된 신청이 승인되지 않고, 지원금 대상자가 관련 행사 및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은 자금조달 승인을 취소한다.

22.3 22.1.1 항에 속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자는 기금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2.4 22.1.2 항에 속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원받은 전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은 강제 징수하고, 반환기간 만료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해당 지원금 대상자가 제출하는 지원금 신청을 거부한다.

22.5 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 지원금 대상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금에서 확인한 결과 지원금 대상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행사/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금은 반드시 종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 이유가 기금의 확인을 받지 못한다면, 기금은 반드시 자금 조달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23. 자금조달 비준 취소

23.1 기금이 지원비준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 23.1.1 지원금 대상자가 허위적인 진술,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을 받은 경우;
- 23.1.2 지원금 대상자가 비준 결정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자금조달 자금을 사용한 경우;
- 23.1.3 지원금 대상자가 지원받는 행사나 프로젝트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참여자나 공공이익, 특히 공공 안전 또는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
- 23.1.4 지원금 대상자가 수행한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양호한 풍습을 위반할 경우;
- 23.1.5 제3항 지원범위, 제4항 지원요건, 제5항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며, 기금이 정한 기간 내에 부적절한 사정을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 23.1.6 본 정관에 의해 자금 지원을 취소해야 하는 명시된 기타 상황.

23.2 기금이 지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23.2.1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검토 결과가 핵심에서 이탈한 경우.
- 23.2.2 제16.2호 규정에 의해 변경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으나, 지원금 대상자가 변경된 내용을 계속 이행할 경우.
- 23.2.3 본 정관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3.3 자금조달 비준 취소 결과:

- 23.3.1 지원금 대상자는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수취한 모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 23.3.2 기금은 지원금 대상자가 기탁 승인 취소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탁 신청을 거부한다.

23.4 상기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결과:

- 23.4.1 규정된 기간내에 지원받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국 세무집행처에서 강제 징수한다.

24. 보고서 제출 기간 연체한 결과-자금 지원 공제

24.1 지원금 대상자가 연체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공제할 수 있다:

상황	자금 지원 공제
<p>기한 연체 후, 프로젝트 진행 이행 보고서, 총결 보고서 또는 이행 협의 절차 보고서 제출(단, 연체 제출을 승인한 경우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2항에서 명시한 기한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 번 위반으로 기록된다. 2. 발생 횟수에 따라 지원대상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금의 해당 백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발생 시: 5% 공제 - 2회 발생 시: 10% 공제 - 3회 이상 발생시:15% 공제 3. 상술한 자금조달 공제 상황과 제9항(자금조달 조정)을 중첩하여 계산하고, 공제 후 자금조달 금액= 지급 자금조달 금액*(1-A)*(1-B), A와 B는 자금조달 공제 및 조정 비율이다. 4.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제9항에 규정된 자금지원 조정 비율; B는 기한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자금지원 공제 비율;

25. 기타

25.1 기금은 단지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을 제공하며, 그 중 지원받는 사람의 어떠한 상업 행사나 상업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지원금 대상자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행사, 언론 등을 진행함에 있어 기금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5.2 지원금 대상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내륙 또는 기타 국가 지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업의 어떠한 행사나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마카오 특별행정구, 내륙 또는 기타 국가 지역의 법률을 위반하여 민사, 형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지니게 된다면, 지원금 대상자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5.3 지원금 대상자는 자체적으로 관련 부문(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외지 포함)에 신청하여 프로젝트에 필요한 각 유형의 허가증 및 허가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25.4 신청인이 본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상세히 열람하고 이해하고 본 규정의 모든 조항과 내용을 준수하는데 동의하고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25.5 본 정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적용하는 현행 법률법규에 따라 규율되며, 특히 제 40/2021 호 행정법규 ‘문화발전기금의 조직 및 운영’, 제 18/2022 호 행정법규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공재정 지원 제도’, 제 5/2023 호 사회문화사 국장이 회시하여 승인한 ‘문화발전기금 지원 비준 규정’ 및 기타 문화발전기금 지원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5.6 기금은 본 정관에 대한 최종 해석과 결정권을 가진다.

25.7 조회 방법:

전화: 2850 1000;

팩스: 2850 1010;

이메일: dgaf@fdc.gov.mo